

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창 원 시 의 회

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 번호	30
----------	----

제의연월일 : 2026. 7. 16.

제 의 자 : 의 장

1. 제의 이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 등을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함.

3. 참고 자료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
- －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 의사일정(안) : 회의서류 참조

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안)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1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회 기 : 2026년 7월 16일 ~ 7월 27일 (12일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 · 휴회 · 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